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상목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평생교육시설과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7항제5호 중 “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를 “제31조제1항·제2항”으로, “제44조제1항”을 “제44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1호, 같은 조 제3항”으로, “제73조제1항·제2항, 제73조의2, 제74조제1항·제3항”을 “제73조제1항, 제73조의2, 제74조제3항, 제74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4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비과세) ① ~ ⑥ (생 략)	제4조(비과세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법 제4조제12호에서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.	⑦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「지방세법」 제9조제2항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3조 제2항제1호의2, 제15조제2항, 제16조제1항, 제17조, 제17조 의2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제 1항, 제22조제1항·제4항·제 7항·제8항, 제22조의2제1항 · 제2항, 제22조의3, 제23조, 제28조제1항, 제29조, 제30조 제3항, <u>제31조제1항부터 제3</u> <u>항까지</u> , 제31조의4, 제33조제1 항·제2항, 제34조, 제36조, 제 37조, 제38조제1항, 제40조, 제 40조의3, 제41조제1항·제5항 · 제7항, 제42조제2항·제3항, 제43조제1항, <u>제44조제1항</u> , 제 44조의2, 제4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1호, 제46조, 제50	5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1조제1항·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44조제1항, 같</u> <u>은 조 제2항제1호, 같은 조 제</u> <u>3항</u> 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133